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놀이학교 교사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하여 방송한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26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8. 26.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놀이학교 교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자신의 음성을 사전에 동의 없이 녹음, 방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재부는 음성권 침해를 인정,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 자동 소제기가 되었다.

## 보도내용

KBS-1TV : <9시 뉴스> 프로그램 『말로만 ‘명문 놀이방’ … 부실급식에 폐업』 제하의 보도(2010년 8월 24일)

내 용 : ▷ 앵커: 비싸다고 꼭 좋기만 할까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는 명문 놀이방이 아이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고 갑자기 문까지 닫아 버렸습니다. 노○○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에 있는 킨○○놀이학교입니다. 유통식 교육을 한다며 한 달 원비만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곳이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보리차와 빵 등을 아이들에게 먹였다가 학부모들에게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킨○○○ 직원) : 저희 교사 중 한 명이 유통기한 지난 것 찍어서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 기자: 킨○○라는 브랜드와 원생들에게 유기농 음식을 주는 등 최고의 놀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믿었던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중략)

▷ 인터뷰(학원 관계자) : 선생님들 교육시키고 커리큘럼 우리 손으로 다 만들고 보내준 것 몇 년씩 재탕하고… 본사에서 만날 돈 내라고…

▷ 기자: 취재진은 킨○○○ 본사에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노○○입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26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김인규

대리인 강○○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1주일 이내에 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 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는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331, 1332

청 구 명 :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피신청인 : 한겨레, 한겨레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24.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 유지재단인 바보의 나눔이 삼성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삼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보도로 인해 단체의 설립 목적(도덕성, 헌신성)이 훼손되어 재단 운영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기사를 게재한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등 포털업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결정하였고, 네이버 등 포털도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 보도내용

한 겨 레 : 『“한국 천주교, 부정·불의 외면… 공범자적 삶 살고 있다”』 제하의 기사(2010년 8월 18일자 5면)

한겨레닷컴 : 『“한국 천주교, 부정·불의 외면… 공범자적 삶 살고 있다”』 제하의 기사(2010년 8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함 신부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회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천주교가 부정과 불의를 외면하는 등 예언자적 소명을 소홀히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부패한 정부와 불의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공범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톨릭계의 내부 반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제 때 폐쇄적 교회관으로 시대적 고민을 망각했던 부끄러움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징계성 안식년 사태를 낳은 삼성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광복절 특사로 삼성 고위 임원들이 모두 사면을 받은 것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와 권력의 문제”라며 “우리 모두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삼성이 끊임없이 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함 신부는 사제단이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김용철 변호사를 만나고 일을 진행하면서 검찰, 공직자, 권력자, 언론 등 삼성의 돈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영역도 그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최근 관련 인사로부터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바보의 나눔’에도 삼성이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함 신부는 마지막으로 “천주교가 삼성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정과 불의를 외면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이는 신학적으로 공범자적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한국 천주교, 부정·불의 외면…” 바로잡습니다 (또는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 바보의 나눔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8일자 사회면(5면)에 “한국 천주교, 부정·불의 외면… 공범자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천주교의 종교적 영역까지 삼성의 돈이 들어와 있으며, 삼성이나 정권에 부정과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대가로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이어가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는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기사는 바보의 나눔 재단의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기사이며, 확인 결과 바보의 나눔 재단은 기사일 현재까지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331, 1332

청 구 명 :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카톨릭회관 109호

이사장 염수정

대리인 김○○, 이○○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현

대리인 석○○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전○○ 신부 징계성 안식년 비판 함○○ 신부”)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위 보도문을 동일 기한 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기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 간격을 이 사건 보도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한겨레> 8월 18일자 5면 “한국 천주교 부정·불의 외면... 공범자적 삶 살고 있다” 기사에서 함○○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바보의 나눔’에도 삼성이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바보의 나눔 재단’ 은 삼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한 겨 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2010년 10월 8일자 2면)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참조>

한겨레닷컴 : 『10월 8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2010년 10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참조>

## EBS가 서적 도매상에게는 수능교재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점에는 물량을 몰아주는 등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294~1297  
청 구 명 : 각 정 정 · 손 배 청 구  
신 청 인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피신청인 : SBS-TV, SBS콘텐츠허브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20.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EBS가 올 초부터 어음 결제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서적 도매상을 상대로 한 수능교재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한 반면, 자사 온라인 서점인 EBS 북몰에는 물량을 몰아주면서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어음 결제비율을 줄이거나 북몰에 물량을 몰아준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허위 · 왜곡 보도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은 당사자 간의 것이 확정되었다.

### 보도내용

S B S - T V : <8시 뉴스> 프로그램 『EBS의 횡포... 수능교재로 돈벌이 '급급'』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6일)

SBS콘텐츠허브 : 『EBS의 횡포... 수능교재로 돈벌이 '급급'』 제하의 기사(2010년 9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 앵커 : 수능시험의 70%를 EBS 교재에서 출제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EBS 교재는 거의 교과서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중의 서점에서 이 교재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최 ○ ○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 기자 : EBS가 올 초부터 어음으로 결제하는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서 이 한도를 넘긴 추가 주문은 모두 현금을 내도록 거래조건을 바꿨다는 겁니다.

▷ 수능교재 도매상 : 수금을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파이널' 을 사고 싶으면, 그동안 밀린 돈과 앞으로 살 돈을 미리 입금을 하라 이거죠. 돈 없으면 주문을 못 하는 거죠.

▷ 기자 : EBS는 이렇게 도매상에는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자사 온라인 서점인 EBS 북몰에는 물량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출판계의 시각입니다. EBS 측은 이에 대해 “수능 연계율이 높아진 만큼 검토 절차가 길어져 공급이 지연됐다” 면서도 도매상보다는 “EBS 북을 통해 수요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EBS의 횡포 수능교재로 돈벌이 급급' 정정보도문
2. 내 용 : SBS는 2010년 9월 6일 방송된 8시 뉴스에서 'EBS 수능교재로 돈벌이 급급'이라는 제목으로, 서적

도매상들을 상대로는 올 초부터 ‘어음 결제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한도를 넘긴 교재 추가 주문에 대해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거래 조건을 바꾸고 EBS 복물에 물량을 몰아주는 ‘EBS의 횡포’로 도매상이 서점에 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용·보도하면서, EBS 측이 이에 대하여 “도매상보다는 EBS 복물을 통해 수요를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EBS가 ‘수능교재로 돈벌이에만 열중’ 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EBS는 올해 어음 결제비율을 절반으로 줄인 사실이 없고, EBS가 복물에 물량을 몰아준 사실도 없으며, EBS가 복물을 통해 수요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SBS는 ‘EBS의 횡포’, ‘수능교재로 돈벌이 급급’ 등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함으로써 EBS의 명예 및 공익성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294~1297

청 구 명 :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 2동 463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곽덕훈

대리인 오○○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우원길

대리인 박○○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공영화

대리인 박○○

주 문 : 1. 피신청인 (주)에스비에스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별지> 보도문을 SBS-TV <8시뉴스>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 전)에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2. 피신청인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 홈페이지(www.kbs.co.kr)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10년 9월 6일 8시 뉴스 「EBS의 황포 ... 수능 교재로 돈벌이 ‘급급’」 제목의 보도에서 ‘EBS가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EBS 복물에 수능교재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EBS는 최근 발행한 수능 교재 일부를 EBS 복물에 일방적으로 몰아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2010년 10월 22일)

내 용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참조>

### 인터뷰 내용을 발췌 편집한 보도 관련 조정신청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289, 1290

청 구 명 :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피신청인 : EBS-TV, 인터넷EBS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15.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 화면을 4초간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인터뷰 내용이 발췌 편집·보도됨에 따라 의미가 왜곡되었음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금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 자동 소제기가 되었다.

보도내용

EBS-TV, 인터넷EBS : 『EBS 뉴스』 제하의 보도(2010년 6월 7일)

내 용 : ▷ 앵커 : EBS뉴스는 이틀에 걸쳐 현행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지난주 치러진 교육감선거는 후보는 너무 많은데 공약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극심했는데요. 교육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략)

▷ 대학생(강○○) : 지방선거 전까지 교육감이라는 게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 기자 : 후보들이 일단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다보니 선거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이념공방과 조직싸움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육감후보들의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육감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 신념을 표시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법까지 시도지사와 똑같이 제한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은 13일, 정당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감 후보에게는 정책홍보는커녕 얼굴 알리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289, 1290

청 구 명 :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강○○

피신청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사장 박덕훈

대리인 김○○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값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승진 인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신청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사 선임비가 4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

사건번호 : 2010서울조정1359 · 1360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인터넷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0. 9. 2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정정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승진 인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만 4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승진 인사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데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보도내용

인터넷아시아경제 : 『지자체, 또 ‘보궐선거’ 하나?』 제하의 기사(2010년 9월 15일자 사회면)

내 용 : 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 후유증으로 '좌불안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가 하면 인사 비리 등의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평택시장은 승진 인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김 시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전, 현직 공무원 Y모 씨 등은 “김 시장이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 5명으로부터 1천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공직사회에서 조심스럽게 떠돌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인지 김 시장이 한 달 전 검찰에 들어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평택시 을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근거로 김 시장을 지난 7월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고, 또 이에 따른 조사가 끝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검찰이 아직 기소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김 시장 인사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 때문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중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가운데 김 시장이 최근 이른바 잘나간다는 검사출신 변호사 3명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사 선임비만 해도 4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얘기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지자체, 또 ‘보궐선거’ 하나?” 정정보도문(또는 “지자체, 또 ‘보궐선거’ 하나?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 15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지자체, 또 ‘보궐선거’ 하나?”라는 제목으로 김○○ 시장이 승진 인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사 선임비가 4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진 인사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며, 같은 건으로 변호사 선임과 선임비 4억 또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바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합의사항

#### 1. 보도문

가. 제 목 : ‘지자체, 또 보궐선거하나?’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9. 15일자 인터넷사회면에 “지자체, 또 ‘보궐선거 하나?’라는 제목으로 김○○ 시장이 승진 인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사 선임비가 4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 인사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4억 원을 지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 시장님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한 날로부터 72시간 게재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 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보도문을 송고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할 경우 본 정정보도 기사는 피신청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